

# 제 2018-1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회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하여 당사 제 2018-1 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18년 5월 3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두산엔진(주) 기술센터 지하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후 주주총회부터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engine.com>)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오니,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고자 하시는 주주께서는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당사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 별첨 1. 분할합병계약의 요령

2.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분할재무상태표
3.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승계대상 재산목록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2018년 4월 18일



두 산 엔 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동 철

직인  
생략

## 별첨 1.

## 분할합병계약의 요령

### 1.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분할회사	상호	두산엔진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대표이사	김 동 철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분할 승계회사	상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지 원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분할합병의 목적

금번 분할합병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고 본건 분할합병 이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엔진 지분을 제 3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분할합병의 방법

금번 합병은 상법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1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산엔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배정(단,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엔진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함)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합니다.

### 4. 분할합병비율 및 분할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1 주당 액면가 5,000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677,895 주를 발행하여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 주당 0.2679522 [0.5259404(분할비율)×0.5094726(합병비율)]의 비율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고 교부합니다.

- 배정기준일 : 2018 년 06 월 04 일

- 교부예정일 : 2018 년 06 월 18 일

(2)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두산엔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두산엔진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다만,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엔진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3) 분할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 34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4)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할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분할합병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분할합병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5)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분할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두산엔진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산엔진 주식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소송, 영업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총칭하여 "승계대상재산")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이전합니다.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2017 년 12 월 31 일 현재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분할재무상태표(별첨 2 : 단, 2017 년 12 월 말 이후 분할합병 이사회일까지 확정된 차입거래 금[팔백오십억(W85,000,000,000)원] 및 투자주식 중 디비씨의 유상감자금[삼십사억오천사백만(W3,454,000,000)원]으로 인한 순자산 증감액을 반영)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승계대상 재산목록(별첨 3)에 기재된 바에 따르되, 분할합병 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증감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건 분할합병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3) 분할합병기일 전까지 두산엔진 주식회사 또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합병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기타 승계대상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승계대상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는 분할합병기일 등 분할합병 관련 일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본건 분할합병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승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두산엔진 주식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합병에 의한 승계대상재산의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6. 분할합병 전·후의 자본변동

(1) 두산엔진 주식회사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전·후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인한 준비금의 변동은 분할합병기일에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 후		
	두산엔진(주)	두산중공업(주)	두산엔진(주)	두산중공업(주)	
수권주식수	120,000,000	400,000,000	120,000,000	4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69,500,000	32,947,142	117,141,055	
	우선주	-	12,904,210	-	
	합계	69,500,000	119,367,370	32,947,142	130,045,265
자본금	보통주	69,500,000,000	532,315,800,000	32,947,142,000	585,705,275,000
	우선주	-	64,521,050,000	-	64,521,050,000
	합계	69,500,000,000	596,836,850,000	32,947,142,000	650,226,325,000

(2)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 440 조 내지 제 444 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합병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4740596 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단주가 귀속될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으로 인한 매매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보통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을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두산엔진 주식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두산엔진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취득합니다.

## 7. 정부승인 거부 시 해제권

두산엔진 주식회사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분할합병기일 전에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분할합병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번 분할합병의 선행조건으로, 분할합병 후 예정된 두산엔진 주식회사 발행 주식 매각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이 요구됩니다.

## 8. 분할합병 주요 일정

하기 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두산엔진 주식회사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일정 변경 권한 행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두산엔진 (분할회사)	두산중공업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 계약체결일	2018년 03월 15일	2018년 03월 15일
소규모합병 반대이사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8년 03월 28일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18년 03월 28일	-
합병반대이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4월 18일
	종료일	2018년 05월 02일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같은 이사회 예정일	-	2018년 05월 02일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예정일	2018년 05월 0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5월 03일
	종료일	2018년 05월 23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8년 05월 03일
	종료일	2018년 06월 04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5월 03일
	종료일	2018년 06월 04일
분할합병기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분할합병 종료보고 총회일 (이사회 결의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분할합병 등기신청 예정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신주권교부 예정일	2018년 06월 18일	2018년 06월 18일
신주의 변경상장 예정일	2018년 06월 19일	2018년 06월 19일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금번 분할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527조의3 제 4항에 의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분할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9.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 232 조 제 2 항 및 제 527 조의 5 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 232 조 제 3 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 439 조 제 3 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일 : 2018 년 05 월 03 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18 년 05 월 03 일 ~ 2018 년 06 월 04 일
- 공고방법 : 두산엔진 주식회사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공고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별첨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참조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당사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게시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31일 별도기준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회사	분할회사 (분할합병대상부문 제외)	분할합병대상부문	
자 산				
I. 유동자산	403,977,664,714	403,962,723,715	14,940,999	
현금및현금성자산	158,904,916,689	158,904,916,689	-	
단기금융상품	11,457,578,000	11,457,578,000	-	
단기대여금	611,513,302	611,513,30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488,193,088	30,473,252,089	14,940,999	
미청구공사	1,451,140,579	1,451,140,579	-	
당기법인세자산	314,452,270	314,452,270	-	
파생상품평가자산	18,053,931,598	18,053,931,598	-	
확정계약평가자산	4,005,749,038	4,005,749,038	-	
재고자산	170,421,034,713	170,421,034,713	-	
기타유동자산	8,269,155,437	8,269,155,437	-	
II. 비유동자산	919,034,582,102	476,099,680,911	442,934,901,191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	
장기투자증권	395,595,979,573	72,048,000	395,523,931,573	
중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27,920,677,704	21,433,592,840	6,487,084,864	
장기대여금	7,726,437,242	7,726,437,242	-	
장기기타채권	3,869,832,363	3,869,832,363	-	
유형자산	474,096,278,112	433,206,353,818	40,889,924,294	
무형자산	6,465,088,943	6,465,088,943	-	
파생상품평가자산	1,191,688,478	1,191,688,478	-	
확정계약평가자산	81,626,216	81,626,216	-	
기타비유동자산	2,080,973,471	2,047,013,011	33,960,460	
자 산 총 계	1,323,012,246,816	880,062,404,626	442,949,842,190	
부 채				
I. 유동부채	606,501,479,479	469,881,976,949	136,619,502,53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2,448,911,024	82,448,911,024	-	
사채	89,933,788,907	89,933,788,907	-	
초과청구공사	9,489,576,594	9,489,576,594	-	
단기차입금	206,200,000,000	71,200,000,000	135,000,000,000	
선수금	134,889,275,081	134,889,275,081	-	
유동성장기차입금	30,000,000,000	30,000,000,000	-	
파생상품평가부채	1,192,714,029	1,192,714,029	-	
확정계약평가부채	22,089,944,070	22,089,944,070	-	
충당부채	6,735,739,995	6,735,739,995	-	
기타유동부채	23,521,529,779	21,902,027,249	1,619,502,530	
II. 비유동부채	160,545,652,835	146,619,802,534	13,925,850,301	
장기차입금	-	-	-	
사채	128,786,510,692	128,786,510,692	-	
장기기타채무	1,914,380,758	1,914,380,758	-	
순확정급여부채	2,950,623,382	2,950,623,382	-	
파생상품평가부채	82,370,507	82,370,507	-	
확정계약평가부채	2,100,488,060	2,100,488,060	-	
충당부채	4,141,244,651	4,141,244,651	-	
이연법인세부채	19,228,066,135	5,302,215,834	13,925,850,301	
기타비유동부채	1,341,968,650	1,341,968,650	-	
부 채 총 계	767,047,132,314	616,501,779,483	150,545,352,831	
자 본				
I. 자본금	69,500,000,000	32,947,142,200	36,552,857,800	
II. 자본잉여금	367,214,701,425	154,982,055,518	212,232,645,907	
III. 기타자본항목	621,477,800	621,477,800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4,241,023,624	70,622,037,972	43,618,985,652	
V. 이익잉여금	4,387,911,653	4,387,911,653	-	
자 본 총 계	555,965,114,502	263,560,625,143	292,404,489,3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23,012,246,816	880,062,404,626	442,949,842,190	

별첨 3.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승계대상 재산목록

계정과목	내용	세부 사항
승계대상 자산		
유형자산	토지	분할회사 소유 수지기술원 토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39-3, 39-9, 39-10, 39-11, 41-6 및 68-3)
		미래나무어린이집 토지에 대한 분할회사 소유 공유지분(창원시 봉곡동 96-1 (지분 18.4%))
		분할회사 소유 DLI 연수원 토지(춘천시 삼천동 792)
	건물	위 수지기술원 토지 상 분할회사 소유 건물
		위 미래나무어린이집 토지 상 건물에 대한 분할회사 소유 공유지분
비품	위 수지기술원 내 분할회사 소유 비품(수지 R&D 센터 Cluster-용 UPS)	
건설중인 자산	위 DLI 연수원 토지 지상 분할회사 소유의 건설중인 자산(DLI 연수원)	
장기금융자산	지분증권	분할회사 소유 두산밭켓(주) 발행 주식
		분할회사 소유 두산건설(주) 발행 전환우선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증권	분할회사 소유 두산큐백스(주) 발행 주식
		분할회사 소유 디비씨(주) 발행 주식
미수금	미수금	계열사 전출자에 대한 분할회사의 대여금채권(주택)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두산타워 지주부문 사무실에 대한 분할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서울 연강홀 사무소에 대한 분할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두산회 사무실(매현빌딩)에 대한 분할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승계대상 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두산밭켓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분할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부 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임대보증금	수지기술원에 대한 분할회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대상 계약관계		
상기 승계대상 자산부채와 관련된 계약(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 포함)들은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포함되며, 분할합병기일 기준으로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될 예정임		

별첨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 374 조의 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하여 당사의 안건(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8년 3월 28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가. 안건(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 의사를 ▪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8년 5월 2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 실질주주(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2018년 4월 27일)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승인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매수청구 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2018년 5월 23일)까지 당사에 제출하고 ▪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8년 5월 1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2 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기명식 보통주 1주당 4,329 원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18년 6월 1일부터 ▪ 명부주주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하고 ▪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위 2. 나.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 종료일(2018년 5월 23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 포함)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엔진(주) 주주총회 담당자 (Fax. 02-519-5816)